

서울특별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제1822호)

## 제안 설명



2020. 9. 9.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홍성룡**

(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3선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홍성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나,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사회 곳곳에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들이 만연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복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되어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그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민족정기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국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 국권을 강탈하고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최근 국내 일각에서도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행태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포한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는 비단 일제 강점기에만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 및 일제잔재 청산에 시효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범죄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